

[별표 2] <개정 2011.12.30>

측정단위의 산정기준(제5조제2항 관련)

측정단위	산정기준	표시 단위
1. 공무원 수	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	명
2. 인구수	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	명
3. 가구수	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가구수	가구
4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	명
5. 노령인구 수	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	명
6. 영유아·청소년 수	「주민등록법」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25세 미만 인구수	명
7. 등록장애인 수	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	명
8. 농수산업 종사자 수	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농·수산업 종사자 수	명
9. 사업체 종사자 수	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종사자 수	명
10. 미개량 도로의 면적	「도로법」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로시설로서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미포장 도로 및 미개설 도로의 면적	천제곱 미터
11. 자동차 대수	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	대
12. 행정구역 면적	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면적	천제곱 미터